

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9. 11. 24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12. 18
- 라. 상정일자 : 제91회 서구의회(정기회)회기중
제6차 사회도시위원회(1999. 12. 2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관리과장 황 하 생)

가.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행정 규제 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, 유지·관리 및 개선명령 규정을 폐지함.
- 유료화장실의 승인,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화순)

-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
-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상위법인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